

인증유지관리지침

제정 2013. 11. 01

개정 2016. 04. 01

개정 2017. 03. 10

개정 2021. 03. 19

개정 2022. 06.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 정관 제4조 1항 및 2항과 수의학인증규정 (이하 “인증규정”) 제12조 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인증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인증규정 제12조 1항에 따라 2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간 중 인증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서의 중대한 변화란 인증을 받은 시기의 인증조건과 비교하여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입학정원의 변화, 기본 수의교육과정의 변화 등)를 말한다.

제3조(형식) 중간보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은 최근에 발행된 수의학교육인증편람(대학용)을 참고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제출시기) 최초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는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로 하고, 이후 제출은 2년 후 동일한 일자로 한다.

제5조(평가) 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6조(자료요청) 인증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해당 대학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활용) 인증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인증유형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서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증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의 하에 청문이나 방문확인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인증철회)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인증철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해당 대학에 이를 통보한다.

제9조(소명기회) 인증기간 중 인증교육기관이 인증철회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대학은 판정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심의) 소명이 접수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증판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증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철회를 최종 결정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인증심의 절차에 준한다.

제11조(유지관리평가비용) 인증유지관리 기간 중 인증유지관리평가에 소요되는 일정경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중간보고서 미제출, 인증유지관리지침 제2조②항에서 규정한 중대사항 미신고 또는 유지관리비용 미납 시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 3개월 이내 미 이행 시 인증철회를 한다.

제13조(타 규정 및 관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및 인증판정위원회 운영지침이나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중간보고서는 2023년부터 2년마다 제출한다.